

Ⅲ.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 및 제반 영향

1. 환경변화의 주요내용

가.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채택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에 준하는 한국형 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은 발생주의적 관점의 회계원칙에 기초하여 미래 급여 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을 연금부채평가방식으로 채택하고,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을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표 III-1>참조).

<표 III-1> 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

		국내기준	국제기준
퇴직부채 계산기준	DC	비계속기준	
	DB	비계속기준(청산기준)	계속기준(보험수리적계산기법)
계산의 복잡성		단순(회계담당자혼자가능)	매우복잡(연금계리사도움필요)
필요한 수리적 가정		없음	퇴직률(퇴직시기),사망률, 임금상승률, 할인율, 기대수익률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퇴직급여관련 부채산정에 계속기준을 사용하며,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으로 책임준비금 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 적립금 규제방식 전환

2009년 이후 적립금 규제가 현재 양적규제(legal list rule)에서 자율규제(prudent men rule)방식으로 전면 전환되고 규제완화의 보완조치차원에서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표 I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적인(부분적으로만) 자산운용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DC형의 경우 개인근로자의 투자지식 등을 고려 주식,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표 III-2>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규제 비교 (2008년 기준)

국 가	주 식	부동산	채 권	펀 드	대 출	
한국	DB	30%	50%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혼합형:50%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금지
	DC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없음 (BBB-이상)	주식형 : 투자금지 혼합형 : 투자금지 채권형 : 제한없음	투자금지
미국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 (단, DB는 기업주 투자 10% 이내)					
호주	신중한 투자원칙 및 분산투자 원칙(단, 기업주 자산 5% 이내)					
덴마크	40%	40%	제한없음	40%	제한없음	
캐나다	30%	25%	제한없음	30%	제한없음	
독일	상장:30% 비상장:10%	25%	50%	50%	50%	
일본	법령상 제한없음					

그러나 2008년 2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된 이후 자산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총량규제방식하의 적립비율(funded ratio = 자산의 현재가치/부채의 현재가치)의 설정과 이를 기준으로 한 재무건전성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로법) 개정안은 제도도입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퇴직급여제도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제도의 확산 및 제도운영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3> 퇴직급여보장법 주요 개정안 및 금융권 영향

개정안 내용	보험	타 금융권	
		은행	증권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 도입	○	●	○
근로자 대표동의절차 합리화	○	○	○
복수사용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	○	●	○
중간정산요건의 강화	○	○	○
퇴직시 급여의 개인퇴직계좌 이전허용	○	○	○
DB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마련	●	○	○
퇴직연금 우선변제 규정 명확화 등	○	○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	○	○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 확대	○	●	●
개인형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납부허용	○	●	●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 신설	●	●	○
퇴직연금사업중단에 따른 등록말소근거	○	○	○
계약이전 및 변경관련 규정보완	○	○	○

주 : ○(낮은 긍정적 영향), ◎(보통 긍정적 영향), ●(높은 긍정적 영향)
 자료 : 류건식·서성민(2008)

이 개정안의 주요특징은 첫째 제도도입 및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복수사용자의 DC형 도입이 허용된 점, 둘째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DC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을 허용한 점, 셋째 제도 확산 촉진을 위해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점, 넷째 제도운

영인프라 확충을 위해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가 신설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은행 및 보험사 등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표 III-3>참조), 대체로 보험 및 증권사보다 은행권에 개정안의 내용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¹²⁾

마. 퇴직보험 유예조치 만료 등

퇴직보험(신탁)제도는 유예조치 만료로 인해 2005년 12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2010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제도에 의한 사외적립 방식이 완전 폐지된다. 따라서 2005년 12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퇴직보험(신탁)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왔던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환이 2010년말에는 완전히 마무리 되며, 2011년부터는 퇴직연금만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방식으로 남게 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퇴법이 적용되어 2010년까지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09년 7월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포함되어 DC형 퇴직연금에 한해 정기예금이나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으로 운용될 경우 예금자보험대상에서 개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2. 제반 영향

퇴직연금을 둘러싼 제도 변화들은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제도마다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 상세한 내용은 류건식·서성민(2008.11), pp.10~12 참조

<그림 III-1> 각 제도변화에 따른 유형별 영향

	국제회계기준	자산운용규제 완화	근퇴법 개정	퇴직보험/신탁폐지	예금자보호 허용	세제 개선
전체	●	●	●	●	●	●
DB형	●	●	●	●	○	●
DC/IRA형	●	●	●	●	●	●

주 : ○(낮은 긍정적 영향) ●(보통 긍정적 영향), ●(높은 긍정적 영향)
 자료 : 정승희(2008)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인 퇴직보험 및 신탁제도의 폐지에 서부터 다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까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 변화로 인해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향후 2~3년 내에 현 상태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 각 제도의 변화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세 가지 유형인 DB형, DC형, IRA형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가. 국제회계기준 도입

국제 퇴직연금 회계기준의 적용 시, 부채의 변동성을 고려한 자산배분이 요구되는 등 부채중심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부채 및 자산의 시가평가 도입으로 인하여 잉여금의 변동성을 고려한 퇴직연금의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 자산 중심의 연금운영전략에서 자산 및 부채 모두를 고려한 부채중심의 연금운영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제연금회계기준 적용이후 연금제도의 잉여금(surplus) 보전이 기업이익의 안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변동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과 같은 부채측면의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

<표 III-4> 국제 퇴직연금회계기준 영향

구 분	제반 영향 및 경쟁력
제반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적(부채중심) 리스크관리체제로의 전환가시화(자산중심→ 잉여금 중심) - 부채중대로 사용자퇴직연금상품 니즈 변화(DB형→DC형)예상 -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의 다양성 확대
상품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퇴직연금

또한 국제연금회계 기준 도입으로 연금부채의 평가가 예측단위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일부기업들은 잠재적 연금부채를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의 자금부담 가중정도는 기업의 리스크버퍼 능력, 즉 기업의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잠재적 연금부채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DB형 퇴직연금 상품보다 연금부채계상의 회피차원에서 새로운 퇴직연금상품, 즉 DC형 퇴직연금상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III-4>참조). 이와 더불어 할인율의 저하로 인해 매년 퇴직금부 채무가 증가하여 각 기업은 심각한 적립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향후 기업은 수탁기관을 선택할 때 수탁기관의 장기운용자산의 운용노하우, 장기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축체계, 장기자산 운용자산의 전문인력, 연금시스템 구축체계 등과 같은 질적 평가를 고려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자산운용규제 완화

현재와 같은 비율규제방식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 시, <표 III-5>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투자리스크 및 법규준수리스크의 증대가 예상된다. 퇴직연금 규제완화가 양적규제에서 질적 규제로 전면 전환되

는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투자손실과 소송리스크 증대 등으로 이어져 근로자 수급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표 III-5> 적립금 자산운용규제 영향

구 분	제반 영향 및 핵심경쟁력
제반영향	- 적립률에 따른 총량규제로의 전환(적립률 방식의 건전성 규제) - 투자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법규준수리스크(소송리스크) 증대 - 원리금보장형상품의 투자선호도감소예상(건전성→수익성위주경영)
상품영향	- 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은 적립기준의 강화, 보험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 및 확인, 연금지급보증제도의 도입 등 제반 수급권 보호 장치가 규제완화의 보완 조치 차원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운용폭의 증대로 인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투자선호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투자형 상품의 선호도는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근퇴법 개정

근퇴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 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표 III-6>참조). 특히 2010년 퇴직보험(신탁)의 유예조치 만기로 인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근퇴법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맞물려 퇴직연금시장규모가 보다 증대되는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표 III-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영향

구 분	제반 영향 및 핵심경쟁력
제반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도입 및 연금설계·컨설팅 능력의 제고필요 -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속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의 규모증대 - DC형 및 IRA제도의 활성화 여건조성
상품영향	-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IRA

또한 근퇴법 개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폭을 확대시키고 퇴직연금 수급권 및 가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폭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마. 퇴직보험 유예기간 종료

퇴직보험 및 신탁제도의 폐지는 DB형 시장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12월말 현재 퇴직보험 및 신탁적립금의 규모는 총 26.2조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은행 등 타 금융권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부문을 제외한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중심으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퇴직보험 및 신탁 가입 기업 중 대부분은 긴밀한 노사관계를 중요시하는 대기업이므로 상대적으로 DC형보다 DB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표 III-7>참조).

<표 III-7> 퇴직보험 만료 영향

구 분	제반 영향 및 핵심경쟁력
제반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계약 확보 및 보유계약 이탈 방지를 위해 설계 및 컨설팅능력 재고, 만족도 및 편의성 재고 필요 -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속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의 규모증대 - 퇴직연금 활성화 여건조성
상품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 퇴직연금, IRA

바. 예금보험제 적용

근로자는 2009년 7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예금자보험의 대상이 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까지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보험회사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험상품과 같이 예금자보호 상품으로 운용하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표 III-8>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적용 영향

구 분	제반 영향 및 핵심경쟁력
제반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배당형에서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의 수요 증가 - 예금자보호법 개정은 근퇴법 개정과 함께 연금제도 니즈 큰변화 (DB형 →DC형, IRA)예상 - 기업의 DB형에 대한 예금자보호법 적용 요구 명분확대 - DC형 및 IRA제도의 활성화 여건조성
상품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 퇴직연금

이와 같은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예금자 보호상품 적용확대는 금융회사의

파산리스크로부터 근로자가 비교적 안심하고 금융회사에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예금자보호의 적용확대가 DC형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및 개인퇴직계좌의 자영업자 확대와 같은 근퇴법의 시행과 맞물릴 경우 내년부터 DC형 및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본격적인 수요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 경쟁 요인 및 구도

가. 사업자 경쟁 요인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경쟁력) 요인은 퇴직연금 수요자인 기업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 공급자인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미국¹³⁾ 및 일본¹⁴⁾ 등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운용기관)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자산운용, 안전성, 서비스, 기타(수수료 등) 등을 고려하도록 퇴직연금관련법 및 감독규정에 규정하거나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표 III-9>참조).

13) 미국의 경우 노동부에서 Pension Protection Act 제정 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Meeting Your Fiduciary Responsibilities, October 2008. pp. 5~6(www.dol.gov)

14) 후생노동성 통지(通知)에서는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 운용능력 등을 평가한 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를 선임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통지에서는 운용실적에 관한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투자철학, 운용체제 등에 관한 정성평가를 고려한 종합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I-9> 퇴직연금사업자 경쟁력 요인 및 기준 (예)

경쟁력 요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경쟁력 평가기준)
전문성	컨설팅
	운용역량
	컨설팅 담당자의 지식수준
자산운용력	다양성
	경쟁력 있는 상품
	투자실적
서비스	가입자서비스
	시스템/웹사이트
안전성	신용평가
	회사재무건전성
기타	수수료 적정성
	수수료 투명성
	이미지/평판

자료 : <http://www.Plansponsor.com>.

따라서 퇴직연금 수요자의 운용기관 선택요인을 운용기관의 경쟁력 평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고려요인 및 경쟁력 인식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III-10> 환경변화와 관련 경쟁력 요인

구 분	국제퇴직연금 회계기준	적립금규제 방식 전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예금보험제 적용
핵심 경쟁력	서비스, 건전성, 전문성	자산운용능력, 리스크관리	서비스, 전문성 마케팅	자산운용능력, 건전성

이와 같은 퇴직연금시장의 경쟁력 요인(퇴직연금 사업자 선택 및 경쟁력 인식정도)은 <표 III-10>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 환경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의 니즈변화로 인해 점차 변화하기 마련이다.¹⁵⁾ 최근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단기 운용성과보다 서비스, 건전성 등과 같은 정성적 요인을 삼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사업자도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와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며 장기적인 자산운용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나. 경쟁 구도

퇴직연금시장의 경쟁구도는 <표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보험회사와 은행과의 타 금융권역간 경쟁, 2차적으로 보험회사간 또는 은행간의 동종 금융권역간 경쟁, 마지막으로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운용체계의 질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제도초기(4년~5년이 경과되지 못한 시점)에는 퇴직연금 상품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선점경쟁, 단기적 자산운용성과 및 거래 행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탁기관 내 차별화 경쟁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15) 미국연금전문지 플랜스폰서에 의하면 DC 운영기업과 근로자는 연금사업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서비스(1위), 장기 운용성과(2위), 재무건전성(3위)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 시 고려요인, 즉 사업자의 경쟁력 요인도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자 니즈변화로 인해 점점 바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Plansponsor, 2008 DC SURVEY 참조).

<표 III-11> 퇴직연금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

구분	경쟁 1단계	경쟁 2단계	경쟁 3단계
형태	보험사와 은행간 경쟁	보험사간, 은행간 경쟁	상품·서비스질 경쟁
특징	퇴직연금시장 선점경쟁 (수탁기관간의 경쟁)	수탁기관 내 차별화경쟁 (동류기관간의 경쟁)	고객의 신뢰확보경쟁 (개별고객에 대한 경쟁)
경쟁 요인	정량적 요인 + 거래관계 (자산운용, 수수료)		정량적 요인 + 정성적 요인 (자산운용, 수수료 + 운용체계 질, 서비스, 마케팅)
시기	연금제도 도입단계 (2005~2009)		연금제도 성숙단계 (2010~)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정량적 요인이나 거래관계보다는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 등을 경쟁력으로 하는 고객 신뢰확보 경쟁으로 전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과 같은 계약형 지배구조가 기금형 지배구조로 완전히 전환되고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 폐지 또는 일부 허용 시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